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0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김성원·권선동·김선교

이종배 • 박충권 • 박성훈

김소희 · 김정재 · 인요한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주이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제도개선만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필요함.

우선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인 것으로 보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 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통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마련 및 주주총회 운영 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기업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 및 제344조의3제1 항 및 제2항, 제369조제1항 개정).
-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 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2 및 안 제432조의3 신설)
- 다.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432 조의4 신설)
- 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주식이 이전된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은 그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의 개시 전까지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함(안제432조의5 신설).
- 마.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이 완료된 때에 주주가 되도록 함(안

제432조의6 신설).

- 바.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고,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의 내용을 달리 취급할 수 있으며, 상환의 대가로 회사의 신주를 교부 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주주가 되도록 함(안 제432조의7 신설).
- 아.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안 제432조의8 및 제432조의9제1항 신설)
 - 1)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상환 또는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음.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자.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432조의9제2항 신설)
- 차.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68조제1항, 안 제37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34조 및 안 제435조제2항 개정).

- 카.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382조의3 제2항 신설)
- 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집중투표 도입 또는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의결권 제한 폐지(안 제409조 및 안 제542조의7, 안 제542조의12 개정)
- 파. 특별배임죄를 폐지함(안 제622조 삭제 및 안 제624조, 안 제625조, 안 제627조, 안 제628조, 안 제630조 개정 등).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제417조,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44조제1항 중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이익의 배당
- 2. 잔여재산의 분배
-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및 수
- 4. 상환 및 전환

제344조의3의 제목 중 "제한에"를 "제한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을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의 수, 의결권의 행

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거나 의결권의 수가다른 종류주식"로 한다.

제368조제1항 중 "過半數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를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한다.

제382조의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3(理事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②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 ③ 회사는 회사의 가치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으로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주주의 1인 또는 여럿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과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뜻
-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 액에 미달하는 가액(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① 제4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다는 뜻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 정하는 방법
-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후 지체없이 그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의 개시일 2주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제1항제4 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 ② 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183조를 준용한다.

-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주주는 신주인수 선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전조 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제516조의9제4항 및 제516조의10을 준용한다.
 - ③ 회사의 자기주식은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가 제432조의2제4항제2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 및 상환의 사유
 -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 3. 상환의 효력발생일
 -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제432조의3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2조의3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의 개시일"은 "제432조의7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로 본다.
- ③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 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없다.
- 제432조의8(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 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 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및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32조의9(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51조 및 제429조 내지 제4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수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434조 중 "數와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

다"를 "수로써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5조제2항 중 "數와 그 종류의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를 "수로써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42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제542조의12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2조를 삭제한다.

제624조 중 "前2條"를 "전조"로 한다.

제625조 중 "第622條第1項에 規定된 者"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다.

제627조제1항 중 "第622條第1項에 게기한 者"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한다.

제628조제1항 중 "第622條第1項에 揭記한 者가"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이"로 한다.

제630조제1항 중 "第622條와"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과"로 한다.

제631조제1항제3호 중 "第424條에"를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8에"로 한다.

제632조 중 "第622條"를 "제623조"로 한다.

제637조 중 "제622조, 제623조"를 "제62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생 략)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2
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 3의 4. (생 략)	1. ~ 3의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
	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株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	
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417條의	<u>제417조,</u>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u>이</u>	제344조(종류주식) ① <u>다</u>
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	<u>음 각 호에 정한 사항</u>
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u>상환 및 전환 등</u> 에 관하여 내용	
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	
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u><신 설></u>	<u>1. 이익의 배당</u>

2. 잔여재산의 분배

<<u>신</u>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u>제한</u> 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u>종</u>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u>의결</u>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
<u>사 및 수</u>
<u>4. 상환 및 전환</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 <u>제한</u>
<u>등에</u> 관한 종류주식) ①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
권의 수,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
<u>활의 조건 등을</u>
②
의결
권이 없거나 제한되거나 의결권
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
·.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
權의 행사) ①

法 또는 定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株主의 議決權의 <u>過半數와 發行</u>株式總數의 4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第369條(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 회 마다 1個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지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 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 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반수로써 하
<u>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69條(議決權) ①
다만, 회사가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의 수
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세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u><삭 제></u>
수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u> 에/기 기위한데</u> .

다.

第382條의3(理事의 <u>忠實義務</u>) (생 략) <신 설>

第409條(選任) ① (생 략)

②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 3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 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 과하는 數의 株式을 가진 株主 는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 第1項의 監事의 選任에 있어서 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u>의무와 경영판</u> 단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조사한 정보를 바 탕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 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를 입힌 경우 또는 제397조, 제3 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09條(選任)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삭 제>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 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 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 (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 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 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 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 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 다.

② 전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 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의 정관 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뜻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 ③ 회사는 회사의 가치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선택
 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주주의 1인 또는 여럿이 이 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한 비율 이 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 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

리 정할 수 있다는 뜻

-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과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뜻
- ⑤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의 하사가액을 전주인수선택권부여일 또는 행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제4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 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①

<신 설>

제4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주 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 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 가 결정한다.

- 1.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뜻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 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및 행사조건
-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 지 않거나 행사할 수 있는 내 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 의 범위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사 회의 결의 후 지체없이 그 결 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제4호 의 행사기간의 개시일 2주 전

<신 설>

<u><신</u> 설>

- 에 하여야 한다.
- ④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제 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 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일로부 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수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 ② 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183조를 준용한 다.
-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양 도 및 무상소각) ① 주주는 신 주인수선택권만을 분리하여 양 도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전조 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신 설>

<신 설>

개시되기 전까지 이사회 결의 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신 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제516조의9제4항 및 제516조의10을 준용한다.③ 회사의 자기주식은 신주인 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가 제432조의2제4 항제2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의 구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 및 상환의 사유
 -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 3. 상환의 효력발생일
-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구체적인 내용
-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 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 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제432조의3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432조의3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의 개시일"은 "제432조의7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로 본다.
- ③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 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 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 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 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 항을 준용한다.
- ⑤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신 <u>설></u>

<신 설>

第434條(定款變更의 特別決議) 第 433條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 主의 議決權의 3分의 2 이상의 없다.

제432조의8(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 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 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 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및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 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2조의9(준용규정) ① 신주인 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51조 및 제429조 내지 제4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수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第434條(定款變更의 特別決議) --

數와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 第435條(種類株主總會) ① (생 략)
 - ② 第1項의 決議는 출석한 株主 의 議決權의 3分의 2 이상의 數 와 그 종류의 發行株式總數의 3 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하다.
 - ③ (생략)
- 례) ① ~ ② (생 략)
 -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 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 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④ (생 략)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 <삭 제>

- 第435條(種類株主總會) ① (현행 과 같음)
-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로써 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④ (현행과 같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 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 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 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 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 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 ⑥ (생 략)
-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 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삭 제>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⑤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第622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 等의 特別背任罪) ① 會社의 發 起人,業務執行社員,이사,집행 임원,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 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 行者, 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 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 의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 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② 會社의 清算人 또는 第542條 第2項의 職務代行者, 第175條의 設立委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625條(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 第625條(會社財産을 危殆롭게 하

<삭 제>

第624條(特別背任罪의 未遂) 前2 第624條(特別背任罪의 未遂) 전조

는 罪) 第622條第1項에 規定된 者, 檢查人, 第298條第3項·第29 9條의2・第310條第3項또는 第3 13條第2項의 公證人(인가공증인 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이나 第29 9條의2, 第310條第3項 또는 第4 22條第1項의 鑑定人이 다음의 行爲를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 략)

第627條(不實文書行使罪) ① 第62 | 第627條(不實文書行使罪) ① <u>회사</u> 2條第1項에 揭記한 者, 外國會 社의 代表者, 株式 또는 社債의 募集의 委託을 받은 者가 株式 또는 社債를 募集함에 있어서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는	罪) <u>ই</u>	사	의	발	기 '	인,	업	무	집	행
<u>사</u>	원,	0],	사,	집	행	임의	원,	감	사	위	원
회	위	원,	감	사	또	는	제	38	86 <u>2</u>	とス	∄2
<u>항</u> ,	, 저	1407	7조	제1	항	·, ス	1141	152	조	또	는
<u>제</u> [567	'조의	븨	직-	무대	귀형	방자	-,	지	배	인
<u>기</u>	타	회/	사 양	영업	에	괸	한	Ċ	Ӈ上	_	종
<u>류</u>	또	는	특	정호	한	사	항 9	기	위	임	을
<u>받</u> .	슨	사-	용인	<u>]</u>							

1. ~ 4. (현행과 같음)

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 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記載가 있는 株式請約書, 社債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 請約書,事業計劃書,株式 또는 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

社債의 募集에 關한 廣告 其他 의 文書를 行使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628條(納入假裝罪等) ① 第622 | 第628條(納入假裝罪等) ① 회사의 條第1項에 揭記한 者가 納入 또 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假裝하는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630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 | 第630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 의 瀆職罪) ① 第622條와 第623

<u>인</u>

② (현행과 같음)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 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行爲를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 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 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 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 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② (현행과 같음)

의 瀆職罪) ① 회사의 발기인,

條에 規定된 者,檢查人,第298 條第3項·第299條의2·第310條 第3項 또는 第313條第2項의 公 證人이나 第299條의2,第310條 第3項 또는 第422條第1項의 鑑 定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 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 을 收受,要求 또 는約束한 때에 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631條(權利行使妨害 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2. (생략)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
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
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과
·.
② (현행과 같음)
631條(權利行使妨害 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1. ~ 2. (현행과 같음)

3.第402條 또 등	는 第424條에	定하
는 權利의 1	· · · · · · · · · · · · · ·	

② (생략)

第632條(懲役과 罰金의 倂科) <u>第6</u> <u>22條</u> 乃至 前條의 懲役과 罰金 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지배인에게 적용한다.

3 <u>제424소 노는</u>
제432조의8에
② (현행과 같음)
第632條(懲役과 罰金의 倂科) <u>제6</u>
<u> 23조</u>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
용) <u>제623조</u>
,